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0
------	-----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우리군 공무원의 여비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원을 포함한 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안 제2조의1)
- 나.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2005. 8. 22. ~ 2005. 9. 10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 18673호)
 - 기획감사실-2150(2005.04.01)호와 관련임.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를 “고성군 공무원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 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1(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6조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무원여비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제명 : 고성군 공무원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u>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성군 지방공무원</u> (이하“ <u>공무원</u> ”이라 한다) ----- ----- -----.
제2조의 1(신설)	제2조의 1(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u>운전원</u> 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 <u>공무원여비규정</u> 」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 <u>고성군 관용차량관리 규칙</u> 」 제6조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u>공무원여비규정</u> 」을 준용하되, 「 <u>공무원여비규정</u>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 <u>소속장관</u> ”은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 <u>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u> ”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 <u>공무원여비규정</u> 」 각 조문 중 “ <u>소속장관</u> ”은 각각 “ <u>군수</u> ”로 본다. 2. 「 <u>공무원여비규정</u> 」 제17조제1항 단서중 “ <u>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u> ”는 없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3. 제18조제1항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